

[양식 제6호]

**파 양 신 고 서**

(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)

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	양 부				양 모				
① 양친	성명	한글	(성 / (명)	본(한자)		한글	(성 / (명)	본(한자)		
		한자	(성 / (명)	출생연월일		한자	(성 / (명)	출생연월일		
	주민등록번호		-		주민등록번호		-			
	등록기준지									
	주소									
② 양자	성명	한글	(성 / (명)	본(한자)		주민등록번호				
		한자	(성 / (명)	출생연월일		-				
	등록기준지									
	주소									
③ 양자의 친생부모	부	성명		등록기준지						
				주민등록번호		-				
	모	성명		등록기준지						
				주민등록번호		-				
④ 기타사항										
⑤ 재판확정일자		년    월    일				법원명				
⑥ 동의자 (성년후견인)		① 또는 서명				주민등록번호		-		
⑦ 신고인	양부	① 또는 서명				전 화				
						이메일				
	양모	① 또는 서명				전 화				
						이메일				
	양자	① 또는 서명				전 화				
						이메일				
①소 제기자 ②소의 상대방				① 또는 서명				전 화		
								이메일		
⑧ 제출인		성 명				주민등록번호		-		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## 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및 ②란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⑤란: 재판상 과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과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.[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과양을 할 수 없습니다]
- ⑦란: 양자란은 과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하며, 과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해당항목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
- ⑨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 첨부 서류

-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1. 과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재판상 과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- 3. 과양의 조정(화해)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.
- 4.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과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“동의자”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 - 한국 방식에 의한 과양: 협의과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  
재판과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
  - 외국 방식에 의한 과양: 과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 - ① 재판상 과양(증서등본에 의한 과양 포함)
  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   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   - 우편제출의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  - ② 협의과양의 경우
  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  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   - 우편제출의 경우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